

예 산 총 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55,500,000	16,665,000
일반회계	500,000,000	15,000,000
특별회계	55,500,000	1,665,000
공기업특별회계	42,200,000	1,266,000
수도사업특별회계	19,600,000	588,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600,000	678,000
기타특별회계	13,300,000	399,000
수질개선특별회계	3,900,000	117,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150,000	64,50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560,000	16,8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250,000	37,5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00,000	9,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400,000	72,000
치수사업특별회계	620,000	18,600
기반시설특별회계	580,000	17,40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1,540,000	46,2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